

부속서 7-가-2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
(설립)

1. 아래의 약속 목록은 제7.13조에 따라 자유화되는 경제적 활동, 그리고 유보에 의해 그러한 활동에서 대한민국의 설립 및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 아래의 목록은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약속되는 분야 또는 하위분야 그리고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표시하는 첫 번째 열, 그리고
나. 적용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아래 목록에 언급되지 아니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서 설립은 약속되지 아니한다.

2.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적시함에 있어,

가. **ISIC 개정판 3.1**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4,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1에 규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나. **CPC**란 제7.25조에 대한 각주 27에 언급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그리고

다. **CPC 개정판 1.0**이란 국제연합 통계사무소 통계문서 시리즈 M, N° 77, 1998년 발간 CPC 개정판 1.0에 규정된 중앙품목분류를 말한다.

3.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조치가 제7.11조 및 제7.12조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아래의 목록은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예를 들어, 면허 취득 필요, 보편적 서비스 의무,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필요,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필요 그리고 일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보호받는 구역 또는 특별히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이익이 있는 지역에서 수행될 수 없도록 하는 비차별적 요건)는,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설립과 투자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제7.1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목록은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는 보조금에 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7.11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의 법적 형태의 유형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유지되거나 채택되기 위하여 설립에 관한 아래의 약속 목록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

6. 아래 목록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7. 다음 약어는 아래의 목록에서 사용된다.

오 : 오스트리아

벨 : 벨기에

불 : 불가리아

사 : 사이프러스

체 : 체코공화국

독 : 독일

덴 : 덴마크

유 : 회원국 전부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서 : 스페인

에 : 에스토니아

핀 : 핀란드

프 : 프랑스
그 : 그리스
형 : 헝가리
아 : 아일랜드
이 : 이탈리아
라 : 라트비아
리 : 리투아니아
룩 : 룩셈부르크
몰 : 몰타
네 : 네덜란드
폴 : 폴란드
포 : 포르투갈
루 : 루마니아
슬 : 슬로바키아
베 : 슬로베니아
스 : 스웨덴
영 : 영국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모든 분야 | <p style="text-align: center;">부동산</p> <p>오, 블, 사, 체, 덴, 예, 그, 핀, 형, 아, 이 라, 리, 몰, 폴, 루,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p> <p>오 : 외국의 자연인과 외국 법인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리스뿐 아니라 취득 또는 구매는 권한 있는 지역 당국(Länder)의 인가를 요구하며, 동 지역 당국은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이해가 영향 받는지 여부를 검토함.</p> <p>블 : 외국의 자연인 및 외국 법인(지점을 통하는 방식 포함)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불가리아의 법인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외국 법인 및 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은 재무부의 허가를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 및 부동산의 제한된 재산권¹⁾을 취득할 수 있음. 이러한 허가 요건은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인에는 적용되지 않음.</p> <p>해외에 영주하는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및 외국인이 결정을 채택하는 데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결정의 채택을 저지할 수 있도록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허가를 조건으로 내각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서 부동산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p> <p>사 : 약속 안함.</p> <p>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체코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의 실체의 토지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덴 : 비거주 물리적 및 법적 실체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함.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에 의한 농업용 부동산 구매에 제한이 있음.</p> <p>예 : 농업용 및 임업용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²⁾</p> <p>그 : 법 제1892/90에 따라, 시민이 국경 근접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함. 행정적 관행에 따라, 허가는 직접투자에 쉽게 부여됨.</p> <p>핀 : (올란드(Åland) 제도): 올란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올란드(Åland) 제도의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권리가 제한됨. 올란드(Åland)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그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설립 및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가 제한됨.</p> |

1) 불가리아 재산법은 다음의 제한된 재산을 인정함 : 사용권, 건축권, 상부구조물 설치권과 지역권 및 채취권

2)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않음.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 <p>형 : 외국 투자자에 의한 토지 및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음.³⁾</p> <p>아 : 국내 또는 외국 회사 또는 외국 국민이 아일랜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 그러한 토지가 (농업관련 산업이 아닌) 산업용인 경우 “기업, 무역 및 고용부”로부터의 이 효과를 위한 증명을 조건으로 이 요건이 면제됨. 이 법은 도시 경계 내의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음.</p> <p>이 : 외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의한 부동산 구매는 상호주의를 조건으로 함.</p> <p>라 :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 99년을 넘지 아니하는 토지 리스는 허용됨.</p> <p>리 : 토지 취득에 대하여 약속 안함.⁴⁾</p> <p>몰 : 부동산 재산권 취득에 관한 몰타 법 및 규정의 요건이 계속 적용됨.</p> <p>폴 : 외국인(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 부동산 취득에는 허가가 요구됨. 국가 소유 재산의 취득(즉, 민영화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약속 안함.</p> <p>루 : 루마니아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본부를 보유하지 아니하는 법인뿐 아니라 루마니아 시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루마니아 내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은 생전행위를 통하여 어떤 종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음.</p> <p>베 : 외국인 자본 참여를 통하여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법인은 슬로베니아 영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외국인이 슬로베니아에 설립한 지점⁵⁾은 그들이 설립된 목적에 따른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만을 취득할 수 있음. 다른쪽 당사자 법인 또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한 회사가 국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특별 허가를 조건으로 함.</p> <p>슬 : 외국의 물리적 및 법적 실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 외국의 실체는 슬로바키아의 법적 실체의 설립 또는 합작투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부동산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음. 토지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

3)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않음.

4) 서비스 분야들과 관련하여 이 제한은 기존 GATS 양허에 반영된 제한을 넘지 않음.

5) 상업회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내에 설립된 지점은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나, 활동과 관련하여 지점에 대한 대우는 GATS 제28조 사항에 따른 현지법인과 동일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모든 분야 |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사업</p> <p>유 : 국가 또는 지방 수준에서 공익사업으로 간주되는 경제활동은 공공독점 또는 사적 운영자에 대해서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⁶⁾⁷⁾</p> |
| 모든 분야 | <p style="text-align: center;">설립의 종류</p> <p>유 :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형성되고,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사무소, 경영본부 또는 주영업소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회사의) 현지법인에 부여되는 대우는 대한민국 회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설립한 지점 또는 대리점에 부여되지 아니함.⁸⁾</p> <p>불 : 지점의 설립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예 : 최소 경영위원회 구성원의 절반이 유럽연합 내에 거주해야 함.</p> <p>핀 : 핀란드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에서 동업자로서 사업을 행하는 대한민국인은 사업 허가가 필요하고 유럽연합 내에 영구 거주해야 함. 통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이사회 구성원 및 대리인의 최소 절반이 국적 및 거주요건이 있음. 그러나 특정 회사에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설립자의 절반 및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에 대하여 영구 거주가 요구됨.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동 법인 또한 거주 요건을 조건으로 함. 대한민국의 조직이 핀란드에 지점을 설립하여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허가가 요구됨. 대한민국의 조직 또는 유럽연합의 시민이 아닌 자연인에게는 유한회사의 설립자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됨.</p> <p>이 : 산업, 상업, 기술 활동에 대한 접근은 거주 허가 및 그 활동을 행하기 위한 구체적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불, 풀 : 대표사무소의 운영 범위는 그 대표사무소가 대표하는 외국의 모회사의 광고 및 홍보만을 포함할 수 있음.</p> <p>풀 : 금융서비스를 제외하고 지점에 대하여 약속 안함. 대한민국 투자자는 유한조합, 주식합자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주식회사 (법률서비스의 경우, 오직 등록제휴 및 유한조합)의 형태로만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p> <p>루 : 상업회사의 집행인 총 수의 절반뿐 아니라 이사회의 단독 집행인 또는 회장은 회사 계약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 상업회사 감사와 그 대리인의 과반수는 루마니아 시민이어야 함.</p> |

- 6) 공익사업이 중앙 정부 이하의 수준에서도 종종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별 양허를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약속 목록의 구체적 각주에서는 공익사업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가 예시적이며 비열거적으로 제시될 것임.
- 7) 이 제한은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8)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54조에 따라 이러한 현지법인들은 유럽연합 법인으로 간주됨. 유럽연합의 경제와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연계를 가지는 범위에서 이 현지법인들은 유럽연합 내부시장의 수혜를 받으며, 이는 특히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설립과 서비스공급의 자유를 포함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 <p>스 : (스웨덴에 법적 실체를 설립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회사는 독립적인 경영진과 별도의 회계를 가진 스웨덴에서 설립된 지점을 통하여 상업적 활동을 수행해야 함. 1년 미만의 존속기간을 가진 건설 프로젝트는 지점을 설립하거나 상주 대표를 임명하는 요건으로부터 면제됨. 유한회사(합자주식회사)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설립자에 의해 설립될 수 있음. 설립자 또는 설립자들은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스웨덴인인 법적 실체여야 함. 제휴는 각 동업자가 스웨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설립주체가 될 수 있음. 유사한 조건이 모든 다른 형태의 법적 실체의 설립에 적용됨.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50퍼센트 이상이 스웨덴에 거주해야 함.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또는 스웨덴 시민으로서 스웨덴에서 상업적 활동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활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상주 대표를 지방 당국에 등록해야 함. 일정한 경우에 필요 없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 거주 요건은 면제될 수 있음.</p> <p>베 : 대한민국 회사의 지점 설립은 최소 1년간 원적지국에서 모회사가 법원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함.</p> <p>슬 : 기업을 대표하여 행동하도록 위임받은 인으로서 상업 등기소에 그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자연인은 슬로바키아에서의 거주 허가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됨.</p> |
| 모든 분야 | <p style="text-align: center;">투자</p> <p>서 : 외국 정부 및 외국의 공적 실체⁹⁾의 직접적인 또는 외국 정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회사 또는 그 밖의 실체를 통한, 스페인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사전 인가가 필요함.</p> <p>불 : 공공(회원국 또는 지자체)의 보유 지분이 총 주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인가가 필요함. 회원국 또는 공공의 재산의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경제활동은 양허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외국인 투자자는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음. 외국인 투자자 및 대한민국의 자본참여에 의해 통제를 받는 불가리아 법인은 a) 영해,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부터 천연자원을 시굴, 개발 또는 채굴하고 b) "a)"에 명시된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에 지배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됨.</p> |

9) 그러한 투자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에 대한 비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음.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 <p>프 : 기존 프랑스 기업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33.33퍼센트를, 또는 상장된 프랑스 회사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대한국민인의 구매는 다음의 규제를 조건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매출이 7천6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프랑스 기업에는 이러한 액수가 만족된다는 사전 통지 및 증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 7백6십만 유로 미만의 투자가 자유로움. - 사전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후 경제부 장관이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투자 연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인가는 묵시적으로 그 밖의 투자에도 부여됨. <p>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프랑스 정부가 개별 사안별로 결정하는, 공공에 제공되는 지분의 변동 가능한 총량 이내로 제한될 수 있음. 일정한 상업, 산업, 기술적 활동에서 설립을 위하여 경영 이사가 상시 거주 허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 구체적인 인가가 요구됨.</p> <p>핀 : 대한민국 소유자가 주요 핀란드 회사 또는 주요 핀란드 사업체(1천명 초과를 고용하거나 연매출이 1억6천8백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자산총액¹⁰⁾이 1억6천8백만 유로를 초과)의 의결권의 3분의 1일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하는 지분 취득은 핀란드 당국의 확인을 조건으로 함. 중요한 국가적 이익이 손상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 확인이 거부될 수 있음. 이러한 제한은 통신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p> <p>형 :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한 대한민국인 지분 보유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이 :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거나 유지될 수 있음. 새로이 민영화되는 회사의 의결권은 일정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음. 이 협정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방위, 운송, 통신 및 에너지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많은 지분의 취득은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p> |
| 모든 분야 | <p style="text-align: center;">지리적 구역</p> <p>핀 : 올란드 제도에서는, 올란드에서 지역 시민권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연인 또는 올란드 제도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가 없는 법인의 설립권에 제한이 있음.</p> |

10) 자산총액, 또는 부채총액에 더하여 자본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1. 농업, 수렵업 및 임업 | |
| A. 농업, 수렵업 (ISIC 개정판 3.1: 011, 012, 013, 014, 015)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제외 ¹¹⁾ | 오, 형, 몰, 루 : 농업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 대한민국 투자자의 지분 보유는 49퍼센트까지만 허용됨. 프 : 대한민국 국민의 농업기업 설립 및 대한민국 투자자의 포도밭 취득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아 : 대한민국 거주자가 밀가루 제분 활동을 위하여 설립을 하는 것은 인가를 조건으로 함. |
| B. 임업 및 벌목업 (ISIC 개정판 3.1: 020)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¹²⁾ 는 제외 | 불 : 벌목 활동에 대하여 약속 안함. |
| 2. 어업 및 양식업 (ISIC 개정판 3.1: 0501, 0502) 자문 및 컨설팅 ¹³⁾ 서비스는 제외 | 약속 안함. |
| 3. 광업 및 채석업¹⁴⁾ A. 석탄, 갈탄의 채광; 토탄의 채광 (ISIC 개정판 3.1: 10) B.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¹⁶⁾ (ISIC 개정판 3.1: 1110) C. 금속 광업 (ISIC 개정판 3.1: 13) D. 기타 광업 및 채석업 (ISIC 개정판 3.1: 14) |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¹⁵⁾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에 대하여 약속 안함. |

11)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2)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3)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사업서비스의 6.F.f) 및 6.F.g)에 기재됨.

1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15)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16) 19.A하의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전에서 요금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광업 부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4. 제조업¹⁷⁾ | |
| A. 음식료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5) | 제한 없음. |
| B. 담배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6) | 제한 없음. |
| C. 직물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7) | 제한 없음. |
| D. 의복 제조업; 모피의 가공 및 염색 (ISIC 개정판 3.1: 18) | 제한 없음. |
| E. 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가방, 핸드백, 안장,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19) | 제한 없음. |
| F. 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 코르크 제품 제조업; 고공업 및 조물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0) | 제한 없음. |
| G.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1) | 제한 없음. |
| H.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사업¹⁸⁾ (ISIC 개정판 3.1: 22,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은 제외 ¹⁹⁾) | 이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적 요건이 있음. |
| I. 코르크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31) | 제한 없음. |

17) 이 분야는 사업서비스의 6.F.h)에 기재된 제조업 부수 자문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18) 이 분야는 제조활동에 제한되며, 시청각 관련 또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19)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의 6.F.p)에 기재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J. 석유 정제품 제조업²⁰⁾ (ISIC 개정판 3.1: 232) |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²¹⁾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
| K. 폭발물질 제조업을 제외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4 폭발물질 제조업 제외) | 제한 없음. |
| L.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5) | 제한 없음. |
| M. 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6) | 제한 없음. |
| N. 제1차 금속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7) | 제한 없음. |
| O. 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8) | 제한 없음. |
| P. 기계 제조업 | |
| a) 일반목적의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1) | 제한 없음. |

2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21)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b)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목적 기계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21, 2922, 2923, 2924, 2925, 2926, 2929) | 제한 없음. |
| c)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구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293) | 제한 없음. |
| d) 사무,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0) | 제한 없음. |
| e)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1) | 제한 없음. |
| f)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기기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2) | 제한 없음. |
| Q.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3) | 제한 없음. |
| R.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4) | 제한 없음. |
| S. 기타 (비군사용) 운송장비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5, 군함, 군용 항공기 및 기타 군사용 운송장비 제외) | 제한 없음. |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T. 가구 제조업;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ISIC 개정판 3.1: 361, 369) | 제한 없음. |
| U. 재활용 (ISIC 개정판 3.1: 37) | 제한 없음. |
| 5. 전기,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생산과 자체적 운송 및 유통 ²²⁾ (원자력 기반 전력 생산은 제외) | |
| A. 전력생산, 전력의 자체적 운송 및 유통 (ISIC 개정판 3.1: 4010의 일부) ²³⁾ | 유 : 약속 안함. |
| B. 기체 연료 생산, 기체 연료의 자체적 유통 (ISIC 개정판 3.1: 4020의 일부) ²⁴⁾ | 유 : 약속 안함. |
| C. 증기 및 온수 생산, 증기 및 온수의 자체적 유통 (ISIC 개정판 3.1: 4030의 일부) ²⁵⁾ | 유 : 유럽연합의 석유 또는 천연가스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럽연합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 ²⁶⁾ 되는 법인에 대하여 약속 안함. 직접 지점 설치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

2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23)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의 운영은 포함하지 않음.

24)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및 기체 연료의 운송,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가스의 운송 및 유통, 그리고 천연가스 및 기체 연료의 판매는 포함하지 않음.

25) 에너지서비스에 기재된,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증기 및 온수의 운송 및 유통과 증기 및 온수의 판매는 포함하지 않음.

26) 법인은 다른 자연인 또는 다른 법인이 임원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통제됨. 특히,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통제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6. 사업서비스 | |
| A. 전문직서비스 | |
| <p>a) 법률서비스 (CPC 861)²⁷⁾ 공증, “집행관 업무(<i>huissiers de justice</i>)” 또는 다른 “공무원 업무(<i>officiers publics et ministériels</i>)”와 같이 공공의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는 제외</p> | <p>오 :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자격을 지닌 대한민국 변호사의 지분 참여 및 법무회사의 수익에 대한 공유분은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대한민국 변호사는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p> <p>벨 : 비형사사건에서 “최고법원(<i>Cour de cassation</i>)”에서 대리하는 데에는 쿼터가 적용됨.</p> <p>프 : “최고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e la Cour de Cassation</i>)”와 “헌법법원에서 변론할 자격이 있는 변호사(<i>avocat auprès du Conseil d'Etat</i>)”의 직종에 대한 변호사의 접근은 쿼터를 조건으로 함.</p> <p>덴 :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와 덴마크에 등록된 법무회사만이 덴마크 법무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덴마크 자격증을 지닌 변호사만이 덴마크 법무회사의 임원이 되거나 경영진이 될 수 있음. 덴마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덴마크 법률시험이 요구됨.</p> <p>프 : 일정한 유형의 법적 형태 (“변호사 조합(<i>association d'avocats</i>)” 및 “변호사 참여 회사(<i>société en participation d'avocat</i>)”)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완전하게 가입된 변호사를 위하여 유보됨. 프랑스법 또는 유럽연합법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회사 지분의 75퍼센트를 보유한 파트너들의 최소 75퍼센트는 프랑스 변호사협회에 완전하게 가입된 변호사여야 함.</p> <p>형 : 상업적 주재는 헝가리 변호사(“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i>ügyvéd</i>)”) 또는 변호사 사무소(“소송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설립한 사무소(<i>ügyvédi iroda</i>)”)와 제휴형태를 취하거나 대표사무소 형태를 취해야 할 것임.</p> <p>폴 : 유럽연합 변호사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도 이용 가능하나, 외국 변호사는 등록제휴 및 유한조합의 법적 형태만 이용할 수 있음.</p> |

27) 법률자문서비스, 법률대리서비스, 법적 중재 및 화해/조정 서비스, 그리고 법률문서작성 및 증명 서비스를 포함함.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국제공법, 유럽연합법 및 서비스공급자 또는 그 소속직원이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관할 지역의 법과 관련하여서만 인가됨. 그리고 다른 서비스의 제공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면허 요건 및 절차를 조건으로 함. 국제공법 및 외국법과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이러한 면허 요건 및 절차는 특히 국내 윤리규정의 준수, (활동국 직명에 대한 인정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원자격국 직명의 사용, 보험 요건,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단순 등록 또는 적성검사를 통한 활동국 변호사협회에의 간이 가입, 활동국 내의 법적 또는 직업적 주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유럽연합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 내의 변호사협회에 가입된 완전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해 또는 이를 통해 수행됨. 유럽연합의 관련 회원국 변호사협회에의 완전한 가입은 법정 및 기타 유럽연합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대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국내 절차법 사무 처리를 수반하기 때문임. 그러나 일부 회원국의 경우 변호사협회에 완전히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 변호사가, 동 변호사가 활동하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국가의 국민 또는 동 국가에 속하는 의뢰인을 민사절차에서 대리하는 것이 허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b) 1. 회계 및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 86212 “감사서비스” 제외, CPC 86213, CPC 86219 및 CPC 86220) | <p>오 : 대한민국 회계사(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오스트리아 법적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은, 그 회계사가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p> <p>덴 : 덴마크의 인가된 회계사와 제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회계사는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p> |
| b) 2. 감사서비스 (CPC 86211 및 86212 회계서비스 제외) | <p>오 : 대한민국 감사인(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오스트리아 법적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은, 그 감사인이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상황</p> <p>체 및 슬 : 최소 60퍼센트의 지분 또는 의결권이 국민에게 유보됨.</p> <p>덴 : 덴마크의 인가된 회계사와 제휴를 하기 위하여 외국 회계사는 덴마크 상업 및 회사 기구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함.</p> <p>핀 : 핀란드 책임회사의 감사인 중 최소 1인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이 있음.</p> <p>라 : 서약감사인 상업회사에서는 유럽연합의 서약감사인 또는 서약감사인 상업회사가 의결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해야 함.</p> <p>리 : 75퍼센트 이상의 지분이 유럽연합 감사인 또는 감사회사에 소유되어야 함.</p> <p>스 : 스웨덴에서 승인된 감사인만이 일정한 법적 실체, 특히 모든 유한회사에서 법적 감사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 그러한 감사인들만이 (공식적 목적으로) 자격있는 감사를 행하는 회사에서 주주가 되거나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음. 승인을 위해 거주가 요구됨.</p> <p>베 : 감사회사에서 외국인의 지분은 총 지분의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
| c) 세무자문서비스 (CPC 863) ²⁸⁾ | <p>오 : 대한민국 조세 자문사(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함)의 오스트리아 법적 실체에의 지분 참여 및 수익에 대한 배분은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그러한 제한은 동 조세 자문사가 오스트리아 직종 단체의 회원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됨.</p> <p>사 : 시장접근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p> |

28) 1.A.a) 법률서비스에 기재된 세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률대리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p>d) 건축설계서비스 및 e)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 (CPC 8671 및 CPC 8674)</p> | <p>불 :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민국 투자자는 불가리아 투자자와 제휴하여 또는 하청업체로서 활동해야 함.</p> <p>라 : 건축설계서비스의 경우, 모든 범위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프로젝트 계약을 맺을 권리를 얻기 위하여 라트비아에서 프로젝트 분야에 3년간 활동해야 하며, 대학학위가 요구됨.</p> |
| <p>f) 엔지니어링서비스 및 g)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및 CPC 8673)</p> | <p>불 : 국가적 또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대한민국 투자자는 불가리아 투자자와 제휴하여 또는 하청업체로서 활동해야 함.</p> |
| <p>h) 의료서비스(심리학자 포함) 및 치의료서비스 (CPC 9312 및 CPC 85201의 일부)</p> | <p>사, 에, 핀, 몰 : 약속 안함.</p> <p>오 : 치의료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그리고, 치의료서비스, 심리학자 및 심리치료사에 대하여 제한 없음.</p> <p>독 : 의사와 치과 의사가 공공보험 가입자를 치료하도록 인가를 받은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의 대상이 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 의사의 부족</p> <p>프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p> <p>라 :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에서 의사 및 치과 의사의 부족</p> <p>불, 리 : 서비스의 공급은 인구와 기존의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수립되는 보건서비스 계획에 근거한 인가를 조건으로 함.</p> <p>베 : 사회의료, 위생, 역학(疫學), 의료/생태 서비스, 혈액공급, 혈액준비, 이식 및 검시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영 : 국립보건서비스 소속 의사를 위한 설립은 의료 인력계획을 조건으로 함.</p> |
| <p>i) 수의료서비스 (CPC 932)</p> | <p>오, 사, 에, 몰, 베 : 약속 안함.</p> <p>불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p> <p>형 :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그 분야의 노동시장 조건</p> <p>프 :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또는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통해서만 공급</p> |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j) 1. 조산원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 불, 체, 핀, 형, 물, 베, 슬 : 약속 안함. 프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 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
| 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CPC 93191의 일부) | 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활동만 허용됨.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실존분석적 정신요법사, 식이요법사 및 영양사 불, 물 : 약속 안함. 핀, 베 :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약속 안함. 프 : 유럽연합 투자자는 다른 유형의 법적 형태를 이용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투자자는 “자유 영업 회사(<i>société d'exercice libéral</i>)” 및 “전문인 회사(<i>société civile professionnelle</i>)”만을 이용할 수 있음. 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하위 분야의 고용 상황 라 : 외국인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인력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일정 지역의 고용 상황 |
| k) 의약품 소매 및 의료·정형외과 상품 소매 (CPC 63211) 약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²⁹⁾ | 오, 불, 사, 핀, 물, 폴, 루, 스, 베 : 약속 안함. 벨, 독, 덴, 에, 서, 프, 이, 형, 아, 라, 포, 슬 :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약국의 지리적 밀도 |
| 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CPC 84) | 제한 없음. |

29) 그 밖의 서비스의 제공과 같이, 일반대중에 대한 의약품의 공급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적용가능한 면허 및 자격 요건과 절차를 조건으로 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일부 회원국의 경우, 처방약의 공급만이 약사에게 유보되어 있음.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C. 연구개발서비스³⁰⁾ | |
|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 유 :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연합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
| b) 사회·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2 심리학자 제공 서비스 제외)³¹⁾ | 제한 없음. |
| c) 학제간 연구개발서비스 (CPC 853) | 유 : 공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과 유럽연합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
| D. 부동산서비스³²⁾ | |
| a) 자가 또는 임차 재산 관련 (CPC 821) | 제한 없음. |
| b) 요금 또는 계약에 기반 (CPC 822) | 제한 없음. |
| Ε.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 | |
| a) 선박 관련 (CPC 83103) |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회원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리 : 선박은 리투아니아인인 자연인 또는 리투아니아에 설립된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스 : 대한민국인이 선박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스웨덴 국기를 게양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스웨덴의 영향력이 지배적임이 증명되어야 함. |
|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 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한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야 함. 항공기는 특정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소유 및 통제(이사의 국적을 포함)에 관한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해야 함. 단기 리스 계약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면제가 부여될 수 있음. |

3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31) 6.A.h.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에 기재된 CPC 85201의 일부임.

32) 관련 서비스는 부동산 대리인 직종과 관련되며, 자연인 및 법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모든 권리 및/또는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c) 그 밖의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CPC 83102 및 CPC 83105) | 제한 없음. |
|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 CPC 83107, CPC 83108 및 CPC 83109) | 제한 없음. |
| e) 개인·가정용품 관련 (CPC 832) | 제한 없음. 단, 벨 및 프는 CPC 832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
| f) 통신장비임대 (CPC 7541) | 제한 없음. |
| F. 기타 사업서비스 | |
| a) 광고 (CPC 871) | 제한 없음. |
|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CPC 864) | 제한 없음. |
|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 제한 없음. |
|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 형 : 중재 및 조정 서비스(CPC 86602)에 대하여 약속 안함. |
|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³³⁾ (CPC 8676) | 제한 없음. |
| f)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1의 일부) | 제한 없음. |
| g) 어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2의 일부) | 제한 없음. |
| h) 제조업 부수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및 CPC 885의 일부) | 제한 없음. |
| i) 직업소개, 파견 서비스 | |

33)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은 마케팅 승인 또는 이용 승인의 부여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에 적용됨.(예: 자동차 검사, 식품 검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i) 1. 임원급소개서비스 (CPC 87201) | 불, 사, 체, 독, 예,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서 : 국가 독점 |
| i) 2. 직업소개서비스 (CPC 87202) | 오, 불, 사, 체, 예,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 약속 안함. 벨, 서, 프, 이 : 국가 독점 독 :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노동 시장의 상황 및 발전 |
| i) 3. 사무지원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3) | 오, 불, 사, 체, 독, 예, 핀, 라, 리, 물,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이 : 국가 독점 |
| i) 4. 모델에이전시서비스 (CPC 87209의 일부) | 제한 없음. |
| i) 5. 가사보조인력, 기타 상업 또는 산업근로자, 간호 및 기타 인력 파견서비스 (CPC 87204, 87205, 87206, 87209) | 형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약속 안함. 형 : 제한 없음. |
| j) 1. 조사서비스 (CPC 87301) | 벨, 불, 사, 체, 독, 서, 예,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룩, 물, 네, 폴, 포, 루, 슬, 베 : 약속 안함. |
| j) 2. 경비서비스 (CPC 87302, CPC 87303, CPC 87304 및 CPC 87305) | 덴 :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국적 및 거주요건이 있음. 공항수위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약속 안함. 불, 사, 체, 예, 핀, 라, 리, 물, 폴, 루, 베, 슬 : 국민과 국가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만 면허가 부여될 수 있음. 서 : 시장접근은 사전 인가를 조건으로 함. 인가 부여 시 내각은 능력, 직업적 일체성과 독립성, 그리고 주민 안보 및 공공질서를 위하여 제공되는 보호가 충분한지를 고려함. |
| k) 과학,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³⁴⁾ (CPC 8675) | 프 :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탐사 및 예비조사를 위한 구체적 인가가 요구됨. |
| l) 1. 선박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 제한 없음. |

3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은 광업(예: 광물, 석유 및 가스)과 관련된 일정한 활동에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l) 2.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 라 : 국가 독점 스 : 투자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수용능력 제한 |
| l) 3. 자동차, 이륜자동차, 설상용 차량 및 도로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6112, CPC 6122, CPC 8867의 일부 및 CPC 8868의 일부) | 스 : 투자자가 자신의 터미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의도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됨. 주요 기준 : 공간 및 수용능력 제한 |
| l) 4.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 제한 없음. |
| l) 5. 금속제품, (비사무용) 기계, (비운송 및 비사무용) 장비 및 개인·가정용품 유지 및 보수 서비스 ³⁵⁾ (CPC 633, CPC 7545, CPC 8861, CPC 8862, CPC 8864, CPC 8865 및 CPC 8866) | 제한 없음. |
| m)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 제한 없음. |
| n) 사진서비스 (CPC 875) | 제한 없음. |
| o) 포장서비스 (CPC 876) | 제한 없음. |
| p) 인쇄 및 출판 (CPC 88442) | 리, 라 : 출판 분야의 설립권은 국가에 등록된 법인에만 부여됨(지점은 불가). 폴 : 신문 및 잡지의 편집장에 대해서 국적요건이 있음. 스 : 출판 및 인쇄 회사의 출판자 및 소유자에 대해서 거주요건이 있음. |
| q) 국제회의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 제한 없음. |

35)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6112, 6122, 8867 및 CPC 8868)는 6.F.1)1.부터 6.F.1)4.까지에 기재됨.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CPC 845)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r) 1.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 <p>덴 : 공인 번역사 및 통역사에 대한 인가는 그들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p> <p>폴 : 서약한 통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불, 헝, 슬 : 공식 번역 및 통역에 대하여 약속 안함.</p> |
| r) 2. 인테리어 디자인 및 기타 전문 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 제한 없음. |
| r) 3. 수급대리서비스 (CPC 87902) | 이, 포 :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
| r) 4. 신용조사서비스 (CPC 87901) | <p>벨 : 소비자 신용데이터뱅크의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p>이, 포 : 투자자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
| r) 5. 복제서비스 (CPC 87904) ³⁶⁾ | 제한 없음. |
| r) 6. 통신자문서비스 (CPC 7544) | 제한 없음. |
| r) 7. 전화응답서비스 (CPC 87903) | 제한 없음. |
| 7. 커뮤니케이션서비스 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 목적지가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다음에 열거된 하위 분야 목록에 따른 우편 품목 ³⁷⁾ 의 취급 ³⁸⁾ 과 관련된 서비스: (i) 하이브리드 메일 서비스와 다이렉트 메일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 ³⁹⁾ 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기재된 통신문의 취급, | 제한 없음. |

36) CPC 88442에 해당하며 6.F.p)에 기재된 인쇄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37)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38) “취급”이란 수집, 분류, 운송 및 배달 등의 활동을 말함.

39) 예를 들어 서장, 엽서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p>(ii) 주소가 기재된 소포 및 소화물⁴⁰⁾의 취급, (iii) 주소가 기재된 출판물⁴¹⁾의 취급, (iv) 등기 또는 보험가입 우편물로서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취급, (v) (i)부터 (iii)에 언급된 품목의 특급배달서비스⁴²⁾, (vi) 주소가 미기재된 품목의 취급, 그리고 (vii) 문서 교환⁴³⁾</p> <p>그러나 하위 분야 (i), (iv) 및 (v)는 중량이 350그램 미만일 경우 그 가격이 공공 기본요금의 5배 미만인 통신품목⁴⁴⁾ 및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등기우편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제외된다. (CPC 751의 일부, CPC 71235⁴⁵⁾의 일부 및 CPC 73210⁴⁶⁾의 일부)</p> | |

40) 서적, 카탈로그가 이에 포함됨.

41) 잡지, 신문 및 정기간행물

42) 특급배달서비스는 더욱 빠른 속도와 신뢰성과 함께 발송지로부터의 수집, 수취인에 대한 개별 배달, 종적 조회, 배송 중 도착지 및 수취인 변경 가능성, 수취 확인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음.

43) 제3자에 의한 운송 및 임시장소의 제공을 포함하여 이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간 우편품목을 상호 교환하는 자체배달을 허용하는 수단의 제공. “우편 품목”이란 공공 또는 민간 운영자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상업적 운영자에 의해 취급되는 품목을 말함.

44) “통신품목”이란 발송자가 자체에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주소에 전달 및 배달되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매체에 서면으로 기재된 통신을 의미함. 서적, 카탈로그, 신문 및 정기간행물은 통신품목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45)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육상 운송

46) 우편물품의 자체 항공 운송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B. 통신서비스 이 서비스는 그 운송을 위하여 통신서비스가 필요한 콘텐츠의 제공으로 구성된 경제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함. | |
| a) 모든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된 모든 서비스⁴⁷⁾, 방송⁴⁸⁾은 제외 | 제한 없음. ⁴⁹⁾ |
| b) 위성방송 전송서비스⁵⁰⁾ | 유 : 이 분야의 서비스 공급자는 전기 통신에 대한 유럽연합 규제 틀에 따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 이익 목적을 보호하는 의무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벨 : 약속 안함. |
|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511, CPC 512, CPC 513, CPC 514, CPC 515, CPC 516, CPC 517 및 CPC 518) | 제한 없음. |
| 9. 유통서비스 (무기, 총포탄, 폭발물 및 그 밖의 전쟁 물자는 제외) 다음에 언급된 모든 하위 분야⁵¹⁾ | 오 : 불꽃제조 상품, 가연성 품목 및 폭발 장치, 그리고 독성 물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의약품 및 담배제품의 유통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가진 유럽연합 법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음. 핀 : 알콜성 음료 및 의약품의 유통에 대하여 약속 안함. |

47) 이 서비스는 6.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 기재된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 처리 포함) (CPC 843의 일부)을 포함하지 않음.

48)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 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업자 간의 중계연결은 포함하지 아니함.

49)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일정한 통신 운영자에 대한 지분 보유를 유지함. 그러한 회원국은 미래에도 이러한 지분 보유를 유지할 권리를 유보함. 이는 시장접근 제한이 아님. 벨기에에서 벨기에에 대한 정부의 지분 보유와 의결권은 정부기업의 개혁에 관한 1991년 3월 21일자 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사례와 같이 입법권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됨.

50) 이 서비스는 위성에 의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의 전송 및 수신으로 구성되는 통신서비스(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를 일반공중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위성을 통한, 간섭없는 일련의 전송)를 포함함. 이 서비스는 위성서비스 이용의 판매를 포함하나 가정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패키지를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함.

5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화학제품, 의약품, 의료 및 외과 기구· 의료 물질· 의료용 도구와 같은 의료용품, 군사장비 및 귀금속 (그리고 보석)의 유통에 적용되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담배 및 담배제품 및 알콜성 음료의 유통에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A. 위탁중개인서비스 | |
|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 제한 없음. |
| b) 기타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 | 제한 없음. |
| B. 도매서비스 | |
| a)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도매서비스 (CPC 61111의 일부,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 제한 없음. |
| b) 통신단말기 도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 | 제한 없음. |
| c) 기타 도매서비스 (CPC 622, 에너지제품의 도매서비스 ⁵²⁾ 는 제외) | 프, 이 :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프 : 도매 약국의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약국의 지리적 밀도 |
| C. 소매서비스⁵³⁾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설상용 차량, 그리고 그 부품 및 부속품의 소매서비스 (CPC 61112, CPC 6113의 일부 및 CPC 6121의 일부) | 서, 프, 이 : 담배에 대한 국가 독점 벨, 블, 덴, 프, 이, 물, 포 : 백화점(프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매장의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

52) CPC 62271을 포함하는 이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D에 기재됨.

53) 사업서비스의 6.B. 및 6.F.1)에 기재된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에너지서비스의 19.E. 및 19.F에 기재된 에너지 제품의 소매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p>통신단말기 소매서비스 (CPC 7542의 일부)</p> <p>식품 소매서비스 (CPC 631)</p> <p>그 밖의 (비에너지) 상품의 소매서비스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서비스 제외⁵⁴⁾ (CPC 63211 및 CPC 63297을 제외한 CPC 632)</p> | <p>아, 스 : 알콜성 음료의 소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스 : 판매지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의류, 신발 및 식품의 일시적인 판매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할 수 있음. 주요 기준 :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매장에 대한 영향</p> |
| <p><u>D. 프랜차이즈</u> (CPC 8929)</p> | <p>제한 없음.</p> |
| <p>10. 교육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p> | |
| <p><u>A. 초등교육서비스</u> (CPC 921)</p> <p><u>B. 중등교육서비스</u> (CPC 922)</p> <p><u>C. 고등교육서비스</u> (CPC 923)</p> | <p>유 : 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를 조건으로 함.</p> <p>오 : 고등교육서비스 및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통한 성인 학교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불 : 외국인인 자연인 및 외국 협회의 초등 및/또는 중등 교육서비스 공급과, 고등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체, 슬 :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중등교육 후 기술 및 직업 교육서비스(CPC 92310)를 제외하고 고등교육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p> |

54)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의 소매는 6.A.k)의 전문직 서비스에 기재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 | <p>사, 핀, 몰, 루, 스 : 약속 안함.</p> <p>그 : 초등 및 중등 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 국가 공인 졸업장을 부여하는 고등 교육기관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서, 이 : 공인 졸업장 또는 학위를 발급하도록 인가된 사립 대학의 설립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관련 절차에는 의회의 권고가 포함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설립의 밀도</p> <p>형, 슬 : 설립되어 있는 학교의 수는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을 가진 지방 당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고등학교 및 그 밖의 고등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당국)</p> <p>라 : 장애학생을 위한 기술 및 직업 중등 학교형 교육서비스(CPC 9224)와 관련된 교육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베 : 초등교육에 대하여 약속 안함. 중등 및 고등학교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
| E. 기타 교육서비스 (CPC 929) | <p>오, 벨, 블, 사,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리, 록, 몰, 네, 폴, 포, 루, 베, 스, 영 : 약속 안함.</p> <p>체, 슬 : 교육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를 조건으로 함.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에 대하여 국적요건이 있음.</p> |
| 11. 환경서비스⁵⁵⁾ A. 폐수서비스 (CPC 9401) ⁵⁶⁾ B. 고체/유해폐기물관리 유해폐기물의 국경 간 운송은 제외 a)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b)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C. 대기 및 기후 보호 (CPC 9404) ⁵⁷⁾ | <p>제한 없음.</p> |

55)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56) 하폐수서비스에 해당함.

57) 배기가스 정화서비스에 해당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p>D. 토양 및 수질 개선과 정화 a) 오염 토양 및 수질 처리 및 개선 (CPC 9406의 일부)⁵⁸⁾</p> <p>E. 소음 및 진동 저감 (CPC 9405)</p> <p>F.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 a)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06의 일부)</p> <p>G. 기타 환경 및 부수 서비스 (CPC 9409)</p> | |
| <p>12. 금융서비스</p> | |
| <p>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p> | <p>오 : 대한민국 보험자의 지점 사무소를 위한 면허는, 그 보험자가 대한민국에서 합자주식회사 또는 상호 보험 조합과 대응되거나 동등한 법적 형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거부됨.</p> <p>불, 서 : 불가리아 또는 스페인에 일정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설립하기 전에 대한민국 보험자는 최소 5년간 대한민국에서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운영하도록 인가를 받았어야 함.</p> <p>그 : 설립의 권리는 보험회사의 대표 사무소 또는 그 밖의 상설사무소의 설립을 포함하지 아니함. 단, 그 사무소가 대리점, 지점 또는 본점으로 설립된 경우는 제외함.</p> <p>핀 :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를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발기인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최소 절반이 유럽연합 내에 거주지를 보유해야 함. 대한민국 보험자는 법정 연금 보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점으로서 핀란드 내에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p> <p>이 : 지점의 설립 인가는 궁극적으로 감독 당국의 평가를 조건으로 함.</p> |

58)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의 일부에 해당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 <p>불, 폴 : 보험 중개업자에 대해서 국내 법인화가 필요함(지점은 불가).</p> <p>포 : 포르투갈 내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최소 5년의 사전 운영 경험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직접 지점 설립은 유럽연합 회원국법에 따라 형성된 회사를 위하여 유보되어 있는 보험 중개업을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음.</p> <p>슬 : 대한민국인은 합자주식회사의 형태로 보험회사를 설립하거나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현지법인을 통해 보험업을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p>베 : 외국인 투자자는 보험회사의 민영화에 참여할 수 없음. 상호 보험 기관으로의 가입은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회사(지점은 불가)와 내국인인 자연인에 제한됨. 상담서비스 및 손해사정서비스에 대해서 법적 실체로서의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p> <p>스 : 스웨덴에 법인화되지 아니한 보험중개업체는 지점을 통하여만 설립될 수 있음.</p> |
| <p>B.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보험 제외)</p> | <p>유 : 유럽연합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회사만이 투자펀드 자산의 위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계약형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 본점 및 등록된 사무소를 가진 전문 관리회사를 설립해야 함.</p> <p>불 : 연금 보험은 법인화된 연금 보험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해 수행되어야 함(지점은 불가). 경영위원회의 회장 및 이사회 의 회장에게는 불가리아 내 영주가 요구됨.</p> <p>사 :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소 회원(중개사)만이 사이프러스에서 증권 중개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중개회사는 사이프러스 회사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된 경우에만 사이프러스 증권거래소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음(지점 불가).</p> <p>형 : 대한민국 기관의 지점은 사적 연금 펀드 또는 벤처캐피탈의 관리를 위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되지 않음. 금융기관의 이사회는 헝가리 시민권자로서, 관련 외환규정에서 거주자로 인정되며 최소 1년 이상을 헝가리에 영주하여 온, 최소 2인의 이사를 포함함.</p> <p>아 : 집합투자기구가 계약형 투자신탁 및 변동자본회사(양도가능증권에 대한 집합투자업체인 UCITS는 제외)로 구성된 경우, 수탁인/위탁기관 및 관리회사는 아일랜드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투자 유한조합의 경우 최소 1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아일랜드 내에 법인화해야 함. 아일랜드 증권거래소 회원이 되기 위하여 실체는 (a) 법인화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아일랜드에서 인가를 받고, 본점/등록사무소를 아일랜드 내에 보유하거나, (b)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아야 함.</p> |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 <p>이 : 이탈리아에서 설립을 통하여 증권결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이탈리아에서 설립을 통하여 중앙증권예탁서비스를 운영하도록 인가받기 위하여 회사는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유럽연합의 법령 상 조화된 UCITS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탁자/예탁기관은 이탈리아 또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법인화를 하고 이탈리아에서 지점을 통해 설립할 것이 요구됨. 유럽연합의 법령 상 조화되지 아니한 UCITS의 관리 회사 역시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할 것이 요구됨(지점은 불가). 유럽연합 내에 법적인 본점을 보유한, 은행, 보험사, 투자회사 및 유럽연합 입법 상 조화된 UCITS를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법인화한 UCITS만이 연금 자원 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방문판매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개업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인가된 금융판매원을 활용해야 함. 외국 중개업자의 대표사무소는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p> <p>리 : 자산관리의 목적 상 전문 관리회사로의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리투아니아에 등록 사무소를 보유한 회사만이 자산 예탁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p> <p>포 : 연금기금 관리는 포르투갈에서 법인화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전문화된 회사 및 포르투갈에서 설립되고 생명보험 사업을 행하도록 인가받은 보험회사, 또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연금기금 관리를 위하여 인가된 실체만이 공급할 수 있음. (비유럽연합 국가로부터의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루 : 외국 기관의 지점은 자산관리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되지 아니함.</p> <p>슬 : 슬로바키아 내 투자서비스는 법에 따라 자기자본을 갖춘 합자주식회사의 법적 형태를 지닌 증권딜러, 투자펀드, 투자회사 및 은행이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p>베 : 민영화에 따른 은행 지분 보유 및 사적 연금기금(비강제 연금기금)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스 : 저축은행의 설립자는 유럽연합에 거주하는 자연인이어야 함.</p> |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13. 보건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⁵⁹⁾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서비스만 양허) | |
| A. 병원서비스 (CPC 9311) B. 구급차서비스 (CPC 93192) C.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CPC 93193) D. 사회서비스 (CPC 933) | 유 : 보건 및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양허계약을 조건으로 함. 경제적 수요 심사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운송시설, 인구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 오, 베 : 구급차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블 : 병원서비스, 구급차서비스 및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사, 체, 편, 물, 스, 슬 : 약속 안함. 형 :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플 : 구급차서비스,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영 : 구급차서비스, 병원 외의 거주용 보건시설 서비스 및 조리원 및 요양원 그리고 양로원 외의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
| 14.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 A. 호텔, 레스토랑 및 케이터링 (CPC 641, CPC 642 및 CPC 643)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제외⁶⁰⁾ | 블 : 법인화가 요구됨(지점은 불가).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바, 카페 및 레스토랑에 적용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설립의 밀도 |
| B. 여행알선대행서비스 (여행매니저 포함) (CPC 7471) | 블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포 : 포르투갈에 회사 기반을 가진 상업 회사의 설립이 요구됨(지점에 대하여 약속 안함). |
| C. 관광안내서비스 (CPC 7472) | 제한 없음. |
| 15.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제외) | |

59)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60) 항공운송서비스 중 케이터링은 운송 부수 서비스 중 17.E.a) 지상조업서비스에 기재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 포함) (CPC 9619) | 사, 체, 핀, 몰, 폴, 루, 베, 슬 : 약속 안함. 블 :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 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1),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CPC 96192) 및 극장 부수 서비스(CPC 96193)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에 : 영화관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CPC 96199)에 대하여 약속 안함. 라 : 영화관운영서비스(CPC 96199의 일부)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B. 뉴스제공서비스 (CPC 962) | 프 : 프랑스어로 출판하는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그 회사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뉴스통신사 : 약속 안함. 단, 대한민국 뉴스통신사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지사 또는 지국을 설립할 수 있음.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뉴스를 배포할 수 없음. 블, 사, 체, 에, 형, 리, 몰, 루, 폴, 베, 슬 : 약속 안함. 포 : “Sociedade Anonima”의 법적 형태로 포르투갈에서 법인화된 뉴스회사는 명목주식의 형태로 사회 자본을 보유하여야 함. |
| 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 서비스⁶¹⁾ (CPC 963) | 벨, 블,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라,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오, 리 : 사적 운영자의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 보유는 허가 또는 면허를 조건으로 함. |
| D. 스포츠서비스 (CPC 9641) | 오, 베 : 스키학교서비스 및 산악가이드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블, 사, 체, 에, 라, 몰, 폴, 루, 슬 : 약속 안함. |
| E. 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 (CPC 96491) | 제한 없음. |
| 16. 운송서비스 | |
| A. 해상운송⁶²⁾ | |

6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6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및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해운서비스에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a) 국제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1 ⁶³⁾) b) 국제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12 ⁶⁴⁾) |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
| B. 내수운송 | |
| a) 여객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1 ⁶⁵⁾) b) 화물운송 (국내 연안운송을 제외한 CPC 7222 ⁶⁶⁾) | 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기반한 조치는, 관련된 국가에 기반하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일정한 운수권을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 또는 상시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 과반수를 유럽연합 시민이 보유해야 함.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형 : 설립시 국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 63)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4)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5)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66)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연안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이 양허표는 한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동일한 회원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원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동 회원국의 대륙붕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 회원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운송에 포함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C. 철도운송⁶⁷⁾ a) 여객운송 (CPC 7111) b) 화물운송 (CPC 7112) |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
| D. 도로운송⁶⁸⁾ | |
| a) 여객운송 (CPC 7121 및 CPC 7122) | 유 : 외국인 투자자는 운영자 포함 비정기 버스 임대서비스를 제외하고 한 회원국 내에서 운송서비스(연안운송)를 공급할 수 없음. 유 : 택시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오, 불 :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가진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핀, 라 :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 등록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라 및 스 : 설립된 실체는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서 : CPC7122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국내 수요 이, 포 : 리무진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서, 아, 이 : 시외버스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그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포 : 시외버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

6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철도운송서비스에 적용됨.

68)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b) 화물운송⁶⁹⁾ (CPC 7123, 우편 및 쿠리어 품목의 자체 운송은 제외 ⁷⁰⁾) | 오, 불 : 배타적 권리 및/또는 인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핀, 라 :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 등록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라 및 스 : 설립된 실체는 국가에 등록된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요구됨. 이, 슬 : 경제적 수요 심사가 있음. 주요 기준 : 국내 수요 |
| E. 연료 외의 상품의 파이프라인 운송⁷¹⁾ (CPC 7139) | 오 : 배타적 권리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부여될 수 있음. |
| 17. 운송 부수 서비스⁷³⁾ | |
| A. 해운 부수 서비스⁷⁴⁾ a) 해운화물취급서비스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통관서비스 d)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e) 해운대리업서비스 f)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g)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13) h) 예선서비스 (CPC 7214) |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 이 : 해운화물취급서비스에 대하여 경제적 수요 심사 ⁷⁵⁾ 가 있음. 주요 기준 :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 불 : 직접 지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해운대리업서비스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운회사는 그 주사무소를 위한 대리점으로 활동할 지점 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짐. 선박을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해운 부수 서비스는 불가리아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음.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69)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일부 회원국에 적용됨.

70) CPC 71235의 일부로서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중 7.A. 우편 및 쿠리어 서비스에 기재됨.

71)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B에 기재됨.

7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73) 사업서비스의 6.F.1)1.부터 6.F.1)4에 기재된 운송장비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7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적용됨.

75) 이 조치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i) 해상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j)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케이터링 포함) (CPC 749의 일부) | |
| B. 내수운송 부수 서비스⁷⁶⁾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선원포함 선박임대 (CPC 7223) e) 예선서비스 (CPC 7224) f) 내수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의 일부) g)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 <p>유 : 기존 또는 미래의 내륙 수로로의 접근에 관한 협정(라인-마인-다뉴브 링크에 따른 협정 포함)에 근거한 조치로서, 관련된 국가에 근거를 두고 소유와 관련한 국적조건을 충족하는 운영자를 위하여 운항권 일부를 유보함. 라인강 운송에 관한 만하임 협약을 이행하는 규정을 조건으로 함.</p> <p>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형, 아, 이, 리, 룩, 몰,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설립되는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오 : 자연인이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적조건이 있음.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경영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국적조건이 있음. 오스트리아에 해운회사로 등록 또는 상시 설립이 요구됨. 아울러, 사업주식 과반수를 유럽연합 시민이 보유해야 함. 단, 창고업, 화물운송대리업, 선적 전 조사는 제외</p> <p>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참여는 49퍼센트로 제한됨.</p> <p>형 : 설립시 국가의 참여가 요구될 수 있음. 창고업서비스는 제외</p> <p>핀 :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고 운영되는 선박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

76)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항만서비스,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및 예선서비스에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C. 철도운송 부수 서비스⁷⁷⁾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화물입환서비스 (CPC 7113) e) 철도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3)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해서 약속 안함(법인화 필요).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
| D. 도로운송 부수 서비스⁷⁸⁾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의 일부)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d)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 (CPC 7124) e) 도로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4) f) 기타 지원 및 부수 서비스 (CPC 749의 일부) | 오 :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및 유럽연합 내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법인에만 인가가 부여될 수 있음. 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는 49퍼센트로 제한됨. 핀 : 운영자 포함 상업용 도로차량 임대에 대해서 인가가 요구되나, 외국에 등록된 운송수단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 |

7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됨.

78)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공용구역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E. 항공운송 부수 서비스 | |
| a) 지상조업서비스 (케이더링 포함) | <p>유 : 내국민대우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활동의 분류는 공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약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는 2개 이상의 공급자로 제한될 수 있음.</p> <p>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
| b) 창고업서비스 (CPC 742의 일부) | <p>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p>풀 : 냉동 또는 냉장 물품 및 액체 또는 가스 벌크보관서비스에 대해서, 활동의 분류는 공항의 크기에 의해 결정됨. 각 공항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는 가용 공간의 제약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 이유로는 2개 이상의 공급자로 제한될 수 있음.</p> |
| c) 화물운송대리업서비스 (CPC 748의 일부) | <p>사, 체, 형, 물, 풀, 루, 슬 : 약속 안함.</p> <p>불 : 외국인은 49퍼센트 지분 제한 조건하에 불가리아 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통하여, 그리고 지점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p> <p>베 : 슬로베니아에 설립된 법인만이 통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음(지점은 불가).</p> |
| d) 승무원 포함 항공기 임대 (CPC 734) | <p>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 항공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등록되어야 함. 또는 만약 면허를 부여하는 회원국이 허용하는 경우는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에 등록되어도 됨. 등록되기 위하여 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할 것이 요구될 수 있음.</p> <p>항공기는 특정 국적요건을 충족하는 자연인 또는 자본 및 통제에 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항공사가 운영해야 함.</p> |
| e) 판매 및 마케팅 f) 컴퓨터 예약시스템 | <p>유 : 유럽연합 항공사가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⁷⁹⁾를 대한민국에 있는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받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대한민국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 각각 유럽연합 내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가 대한민국의 항공사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또는 유럽연합 항공사가 대한민국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p> <p>불 :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p> |

79) “동등한 대우”라 함은 유럽연합 항공사 및 유럽연합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공급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F. 연료 외의 물품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⁸⁰⁾ a) 파이프라인에 의해 운송되는 연료 외의 상품의 창고업서비스⁸¹⁾ (CPC 742의 일부) | 제한 없음. |
| 18. 기타 운송서비스 | |
| 복합운송서비스 제공 |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폴, 루, 스, 베, 슬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 : 제한 없음. 각 운송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이 약속목록에 명기된 제한을 저해하지 아니함. 오, 불, 사, 체, 에, 형, 리, 라, 물, 폴, 루, 스, 베, 슬 : 약속 안함. |
| 19. 에너지서비스 | |
| A. 광업 부수 서비스⁸²⁾ (CPC 883) ⁸³⁾ | 제한 없음. |
| B. 연료 파이프라인 운송⁸⁴⁾ (CPC 7131) |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아, 이, 라, 룩, 물, 네, 폴, 포, 루, 슬, 베, 스, 영 : 약속 안함. |
| C.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되는 연료 창고업⁸⁵⁾ (CPC 742의 일부) | 폴 : 에너지 공급국의 투자자는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음. 직영점 설립에 대하여 약속 안함(법인화가 요구됨). |

80) 연료의 파이프라인 운송 부수 서비스는 에너지서비스의 19.C에 기재됨.

81)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2)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3)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다음의 서비스를 포함함: 광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지상 준비, 지상 장비 설치, 드릴링, 드릴링빗 서비스, 케이싱 및 도관 서비스, 머드 제조 및 공급, 고체물질 관리, 피싱 및 하향공 특수작업, 유정지 지질 및 드릴링 통제, 코어 채취, 유정 검사, 와이어선서비스, 끝처리 액(염수) 공급 및 작업, 끝처리 기구 공급 및 설치, 시멘트 (프레스 펌핑), 스티물레이션 서비스(파쇄, 산성 물질 처리 및 프레스 펌핑), 개수 및 유정 보수 서비스 그리고 유정 충전 및 폐쇄 천연자원에 대한 직접 접근 또는 이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8.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기재된 석유 및 가스 외의 자원 채굴을 위한 지상 준비 작업(CPC 5115)은 포함하지 아니함.

84)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5)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D.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와 관련 제품의 도매서비스 (CPC 62271) 그리고 전기, 증기 및 온수 도매서비스⁸⁶⁾ | 유 : 전기, 증기 및 온수의 도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
| E. 자동차연료 소매서비스 (CPC 613) F.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판매 (CPC 63297) 그리고 전기,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 소매서비스⁸⁷⁾ | 유 : 자동차연료, 전기, (용기에 담기지 않은) 가스, 증기 및 온수의 소매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벨, 불, 덴, 프, 이, 물, 포 : 연료용 유류, 용기에 담긴 가스, 석탄 및 목재의 소매서비스에 대해서 백화점(프의 경우 대형 매장에 대해서만)에 대한 인가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 기존 매장에 수와 이에 대한 영향, 인구 밀도, 지역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
| G. 에너지유통 부수 서비스⁸⁸⁾ (CPC 887) | 오, 벨, 불, 사, 체, 독, 덴, 서, 에, 핀, 프, 그, 아, 형, 이, 록, 리, 물, 네, 폴, 포, 루, 슬, 스, 영 :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그리고 컨설팅서비스에 대하여 제한 없음. 베 : 가스유통 부수 서비스를 제외하고 약속 안함. 가스 유통에 대하여 제한 없음. |
| 20. 기타 서비스 | |
| a) 세탁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 제한 없음. |
| b) 머리카락서비스 (CPC 97021) |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
| c) 화장,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서비스 (CPC 97022) |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

86)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7)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88) 컨설팅서비스를 제외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적용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유보 사항의 기술 |
|--|---|
| d)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미장서비스 (CPC 97029) | 이 : 경제적 수요 심사가 내국민대우 원칙에 기반하여 적용됨. 적용되는 경우 경제적 수요 심사는 기업의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함. 주요 기준 : 인구 및 기존 사업의 밀도 |
| e) 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육체적 휴식복지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는 스파서비스 및 비의료요법 마사지 ⁸⁹⁾⁹⁰⁾ (CPC ver. 1.0 97230) | 제한 없음. |
| f) 통신연결서비스 (CPC 7543) | 제한 없음. |

89) 의료요법 마사지와 열치료서비스는 6.A.h) 의료서비스 및 치의료 서비스, 6.A.j) 2.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의료보조 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건서비스(13.A 및 13.C)에 기재됨.

90) 공익사업에 대한 수평적 제한이 일정한 수원지와 같은 공용구역에서 제공되는 스파서비스 및 의료요법이 아닌 마사지에 적용됨.